

고양시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호-14호

## - 2024년 고양시의회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- [정책지원관]

2024년 고양시의회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(정책지원관)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4년 10월 25일

고양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

### I 임용분야 및 인원

임용분야 <근무부서>	임용직급	임용 인원	임용 기간	근무 시간	담당업무
정책지원관 <상임위원회>	지방 한시임기제 7호	1명	6개월 (예정)	주 35시간	1. 조례 제정·개정 및 폐지, 예산·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·수집·분석 및 지원 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. 의원의 5분 자유발언·시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지원 6. 그밖에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,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

※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휴직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휴직기간 동안 대행함.

### II 법적 근거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, 제27조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8조의16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
- 「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

### Ⅲ 응시자격 기준

- 공통요건 \*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
  - 결격사유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  - 응시 연령: 18세 이상(2006. 12. 31. 이전 출생자)
  - 거주지·성별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).
  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외국인이 아닌 자)

#### 〈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〉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 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□ 직무분야 자격요건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

임용분야	응 시 자 격 요 건 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<b>정책지원관</b> <small>(한시임기제 7호)</small>	1. 학사학위 취득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전문대학의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.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<b>[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]</b> ◇ 국회, 지방의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·출자기관, 기업에서 입법, 행정, 법무, 예산·결산·회계, 감사·조사, 연구·분석, 문화·관광, 복지, 의원보좌 관련 업무

※ 참고(유의) 사항

- 1) **실무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제5항).**
- 2)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: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(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).
- 3)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 상에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(예시: 주20시간 근무), 근무시간(주40시간 기준)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.
- 4) 공공기관은 경영정보공개시스템(alio.go.kr)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

## IV 보수 및 복무

### □ 보수 및 근무 조건

(단위: 원)

채 용 직 급	근 무 시 간	봉급기준액	주35시간 환산 봉급액
한시임기제 7호	주 35시간	2,255,700원	1,973,730원

- 연봉: 「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30의2에서 정하는 봉급 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(주 35시간)에 비례하여 지급
- 연봉 외 급여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- 고용보험: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 희망시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 가능

### □ 복무
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및 「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, 「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적용
- 근무기간: 임용약정일로부터 6개월(예정)

## V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### □ 응시원서 접수

- 원서교부: 고양시의회 홈페이지 임용시험 공고 (붙임 파일)
- 시험공고: 2024년 10월 25일(금)
- 접수기간: 2024년 11월 5일(화) ~ 11월 7일(목) <3일간>
- 접 수 처: 고양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인사팀
- 접수방법: 방문 또는 우편(등기) 접수 ※ 퀵서비스, 택배, 팩스, 인터넷 접수 불가
  - ① 방문접수(대리 가능, 응시자 및 방문자 신분증 지참) ※ **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**
    - 근무시간 내(09:00 ~ 18:00)에 접수 \*접수마감일 18:00 이후에는 접수 불가
    - 제출 전 고양시청 신관 1층(민원여권과)에서 해당직급 증지(7천원) 구입 후 응시원서에 부착 (고양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)
  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
※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.

## ② 등기우편 접수

- 주소: (우)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(주교동), 신관 지하1층  
고양시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인사팀 인사담당자
- 제출서류 일체 구비하여 **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인정**, 우편발송 시 **반드시 전화** (031-8075-3878(3879))로 접수 여부 확인할 것
- 해당 직급 응시수수료(7천원) 비용만큼 **통상환증서**(우체국에서 판매)를 구입하여 동봉
  - ※ **받을 분 기재 금지,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제출 불가**
  - ※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(16:00) 유의
- 봉투 겉면에 ‘고양시의회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(정책지원관) 임용시험 응시원서’ 문구 표기
- 응시표를 이메일로 통보하므로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

## □ 시험일정

시험공고	접수기간	시험구분	시험일시 · 장소	합격자발표
2024. 10. 25.(금)	2024. 11. 5.(화) ~ 11. 7.(목) <3일간>	서류전형	-	2024. 11. 13.(수) 전·후
		인성검사	2024. 11. 14.(목) 전·후 개별 메일주소로 링크 전송하여 비대면으로 실시	
		면접시험	2024. 11. 18.(월) 전·후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	2024. 11. 22.(금) 전·후

※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고양시의회 홈페이지 - 의회소식 -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합격 여부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니 고양시의회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 □ 시험방법

### ○ 1차 시험(서류전형)

- 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
- 단, **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**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5조제4항).

※ 개인별 PC를 통해 인성검사 별도 실시

○ 2차 시험(면접시험)

- 1차 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구술에 의한 문답식으로 검정
- 평가기준: 아래의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, 중, 하로 평정

· (평정요소)

-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 |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|
|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|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 |
|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|                |

· (평가방식)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·응답(개별면접)

· (불합격 기준)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‘하’로 평정하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‘하’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됨.

○ 합격자 결정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.

○ 최종합격자 결정: 고양시의회 홈페이지(공지사항란)에 게시

○ 추가합격자 결정

\*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0조의3)

## VI 제출 서류

※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, 클립·집게 등을 사용하여 연번 순서대로 1개로 묶어서 제출

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[별지1호 서식]

② 응시원서 1부 [별지2호 서식] :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

- (방문접수) 고양시청 신관1층 <민원여권과>에서 고양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후 수입증지

응시원서에 부착(응시수수료: 7,000원)

- (우편접수) 우체국에서 통상환증서(7,000원 상당) 구입 후 동봉 발송(정부 수입인지 불가)

※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,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중 1개를 첨부하여 제출

③ **이력서 1부 [별지3호 서식]**

- 증빙자료(경력증명서)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력 기재 (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 불가)

④ **자기소개서 1부 [별지4호 서식]**

⑤ **직무수행계획서 1부 [별지5호 서식]**

⑥ **최종학력증명서 1부 (졸업증명서)**

- 대학교(전문학사)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,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해당 졸업증명서 제출

※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- 사본 제출 가능 (단, 최종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)

⑦ **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,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,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[별지6호 서식]**

⑧ **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[별지7호 서식] (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)**

-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성명, 연락처 기재되어야 함.

※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

-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. **(근무부서, 근무기간, 직위(급) 및 담당업무 기재)**

**(근무부서, 근무기간, 직위(급) 및 담당업무 기재)**

- 회사 자체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업무분장표 등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.

- 비상근(시간제)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**주 단위 근무시간**을 명시

-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

-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,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‘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’를 첨부하여 제출,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함.

※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
- ⑨ **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** (전체내역) : 국민건강보험공단 (<http://www.nhic.or.kr>)
  - 제출한 경력(재직)증명서 상의 경력사항이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상근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.
  - 국민건강보험공단([www.nhic.or.kr](http://www.nhic.or.kr))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([www.ei.go.kr](http://www.ei.go.kr)) 홈페이지에서 출력
  -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‘보험가입 전체기간’ 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
  - **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 서류 제출**
- ⑩ **서류전형 제출 서류 1부 [별지8호 서식]**
- ⑪ **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[별지9호 서식]**
- ⑫ **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** (해당자에 한함, 원본 지참)
  - 어학능력성적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
- ⑬ **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및 개명사항 포함 1부** (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비동의자에 한함)
- ⑭ **기타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서류 [수상실적 등](해당자에 한함.)**
  - 사본 제출 가능

### ※ 서류제출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기재
-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**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 불가**
-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**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**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위, 경력증명서 등)는 **반드시 한글번역본 공증하여 제출**
-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 시 원본 지참
-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본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

## VII 기타사항

- 가.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고양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지원 불가합니다.
- 다.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작성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



경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·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.

※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 수수료가 반환되며, 입증자료 중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, 14일 이내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(방문 수령만 가능)

라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마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3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.

바.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사.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1회 이상 재공고 후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.

아. 응시서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 (응시원서에 전자우편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)

※ **보안서류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.**

자.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.

차. 합격자 등록기간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- 카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의2(명예퇴직 등) 제3항제2호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,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됩니다.
- 타.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양시의회 홈페이지([www.goyangcouncil.go.kr](http://www.goyangcouncil.go.kr))에 공고합니다.
- 파. 기타 관련한 사항은 고양시의회 의정담당관 인사팀(☎031-8075-3878)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